



2017년 농식품 해외시장 맞춤형조사

Product : 원두커피(Brewed Coffee)

Country : 필리핀(Philippines)

Contents

I. 시장 통계	3
1. 통계분석 기준 설정	5
2. 무역통계 종합분석	6
3. 품목통계 종합분석	7
II. 통관 및 검역 정보	8
1. 통관 및 검역 절차	11
2. 관세율 정보	14
3. FTA 정보	15
4. 통관 및 검역 주의사항	16
※ 참고문헌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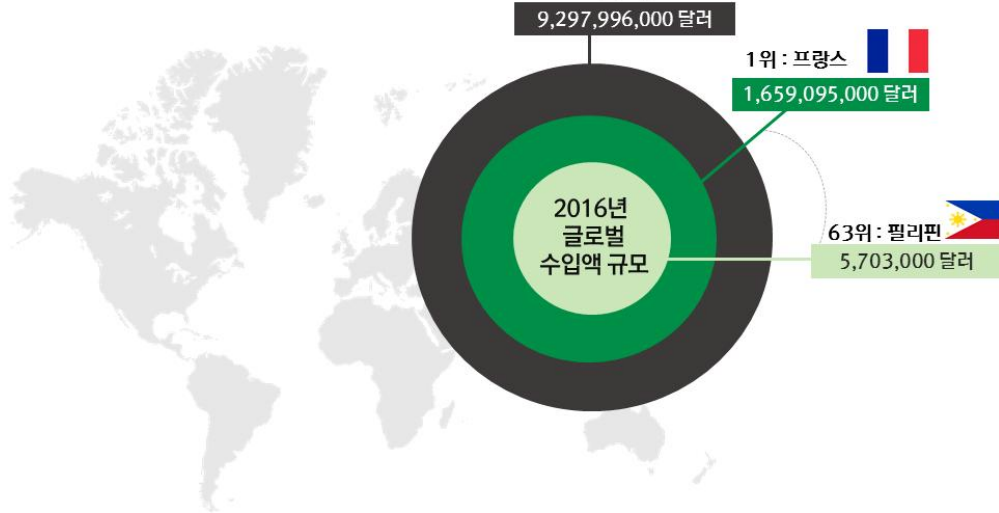
I. 시장 통계

※ 시장 통계 OV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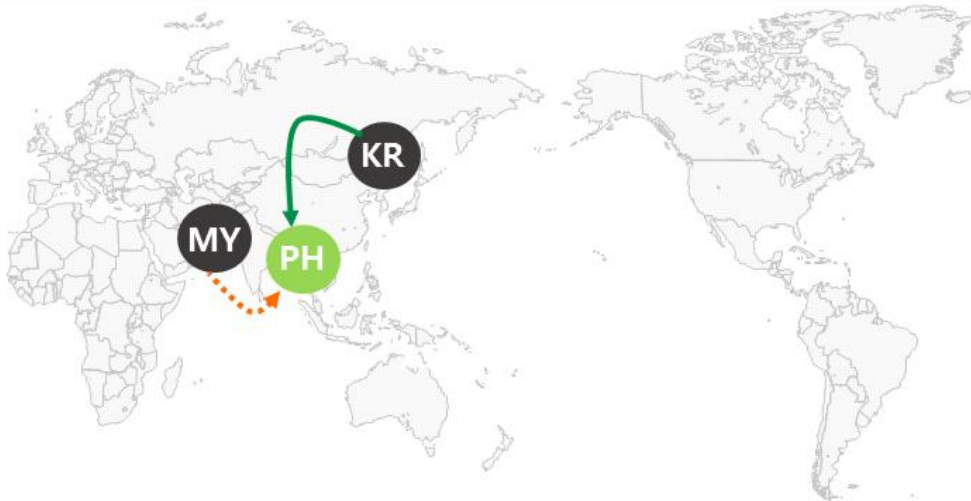
1. 통계분석 기준 설정
2. 무역통계 종합분석
3. 품목통계 종합분석

시장 통계 OVERVIEW

2016년 글로벌 HS CODE 0901.21 품목 수입액 규모
글로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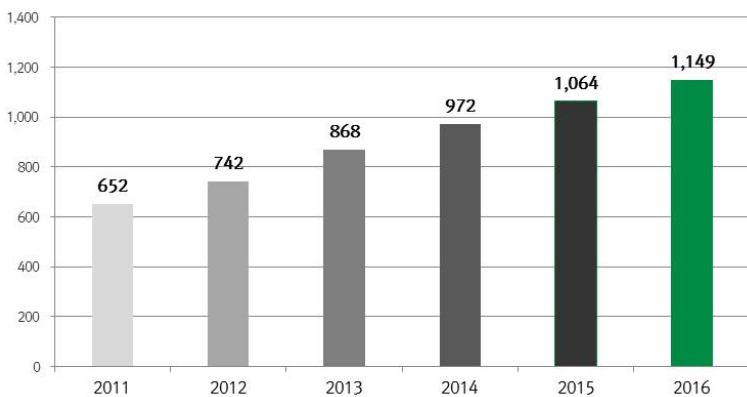


2016년 필리핀 내 HS CODE 0901.21 품목 수입액 규모



▶ 필리핀 커피 판매액 규모 추이(2011 ~ 2016년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HS CODE 0901.21 품목
글로벌 수입규모
1위 프랑스, 63위 필리핀
필리핀 수입상대국,
1위 말레이시아, 한국 18위
2016년 필리핀 커피 판매액 규모,
11억 4,900만 달러

1. 통계분석 기준 설정

HS CODE 확인 사이트

1	한국 관세청
	www.customs.go.kr
2	한국 관세법령정보포털 3.0
	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3	필리핀 관세청
	www.customs.gov.ph

원두커피 통계 기준 설정

원두커피 품목의 시장성 판단을 위해 통계 조사를 진행함. 글로벌 및 필리핀의 수입통계 확인을 위해 HS CODE를 통계 기준으로 설정하고 조사 대상국의 시장규모 파악을 위해 품목 키워드를 조사 기준으로 설정함.

수입 통계 기준, HS CODE 0901.21로 설정

글로벌 및 필리핀 내 원두커피의 수요 파악을 위해 전 세계 공통인 HS CODE 6자리 0901.21을 수입통계 분석 기준으로 설정함

표 1.1 : 필리핀 원두커피 조사 항목별 통계 기준 설정

분류	조사 항목	통계 기준	
무역 통계	글로벌 수입규모 및 성장률	HS CODE	0901.21
	필리핀 수입규모 및 성장률		0901.21
품목 통계	필리핀 커피 판매 추이 및 성장	품목 키워드	Coffee Sales

표 1.2 : 한국 내 원두커피 HS CODE 분류

국가	HS CODE	품명
한국	0901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
	0901.2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출처 : 한국 관세법령정보포털 3.0(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필리핀 관세위원회(www.tariffcommission.gov.ph)

표 1.3 : 필리핀 내 원두커피 HS CODE 분류

국가	HS CODE	품명
필리핀	0901	커피(볶은 것인지 또는 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커피의 각과 피 및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0901.2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0901.21.10	분쇄하지 아니한
	0901.21.10A	수량제한 내
	0901.21.10B	수량제한 외
	0901.21.20	분쇄한 것
	0901.21.20A	수량제한 내
0901.21.20B	수량제한 외	

출처 : 한국 관세법령정보포털 3.0(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필리핀 관세위원회(www.tariffcommission.gov.p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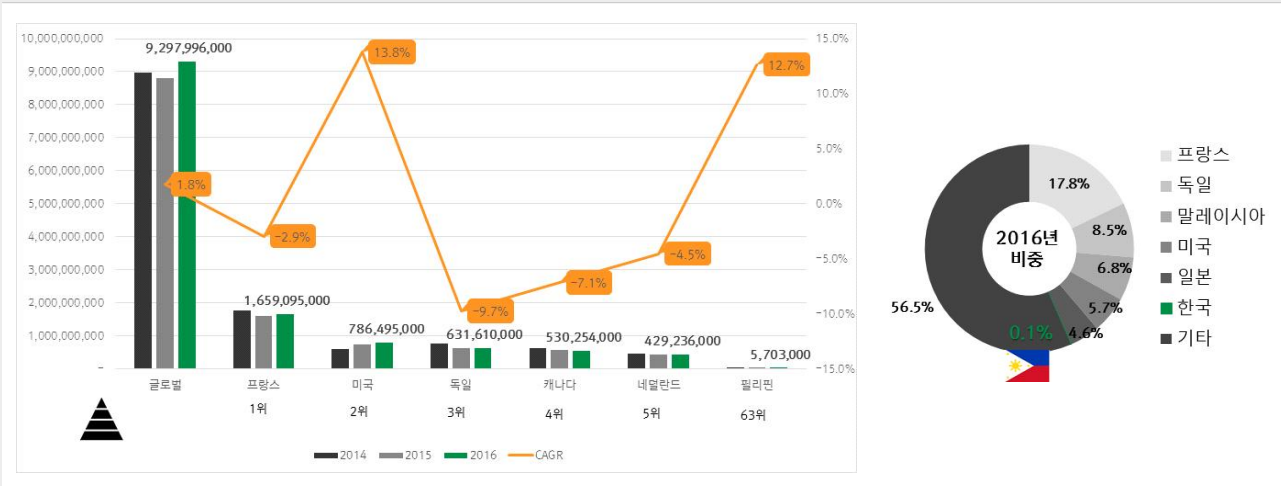
1. 의뢰사 제품에 적합한 HS CODE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한국 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간한 '관세율표/관세율표해설서/HS 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을 통하거나 관세청 UNI-PASS 홈페이지 '품목분류정보'를 검색하거나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3.0'을 활용하는 법 등이 있음. 법적인 효력을 가진 HS CODE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음

2. 무역통계 종합분석

글로벌 수입 통계 분석

표 1.4 : 글로벌 HS CODE 0901.21 수입액 규모 및 비중

(단위 :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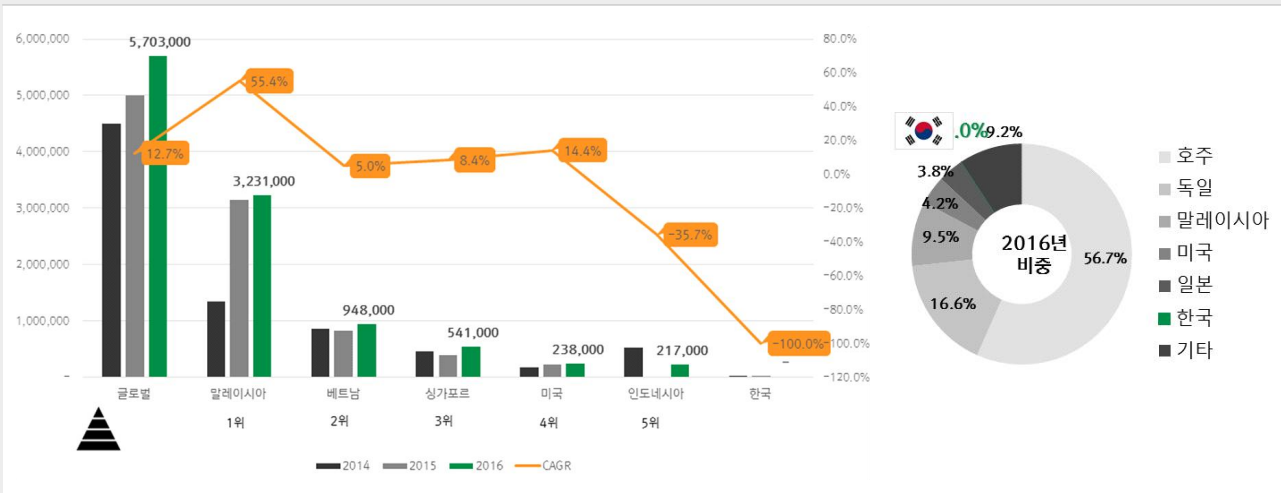
출처 : International Trade Centre(www.trademap.org)

- 2016년 기준 글로벌 HS CODE 0901.21 품목의 수입규모는 92억 9,799만 6,000달러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1.79%의 성장률을 기록함. 필리핀 수입액은 동 기간 동안 연평균 12.7%로 성장하여 2016년 기준 570만 3,000달러를 기록함
- 2016년 기준 글로벌 HS CODE 0901.21 수입규모 1위는 프랑스로 글로벌 수입규모의 17.8%를 차지하고 있으며, 필리핀 수입규모는 전체 중 0.1%로 확인됨

필리핀 수입 통계 분석

표 1.5 : 필리핀 HS CODE 0901.21 수입액 규모 및 비중

(단위 : 달러, %)



출처 : International Trade Centre(www.trademap.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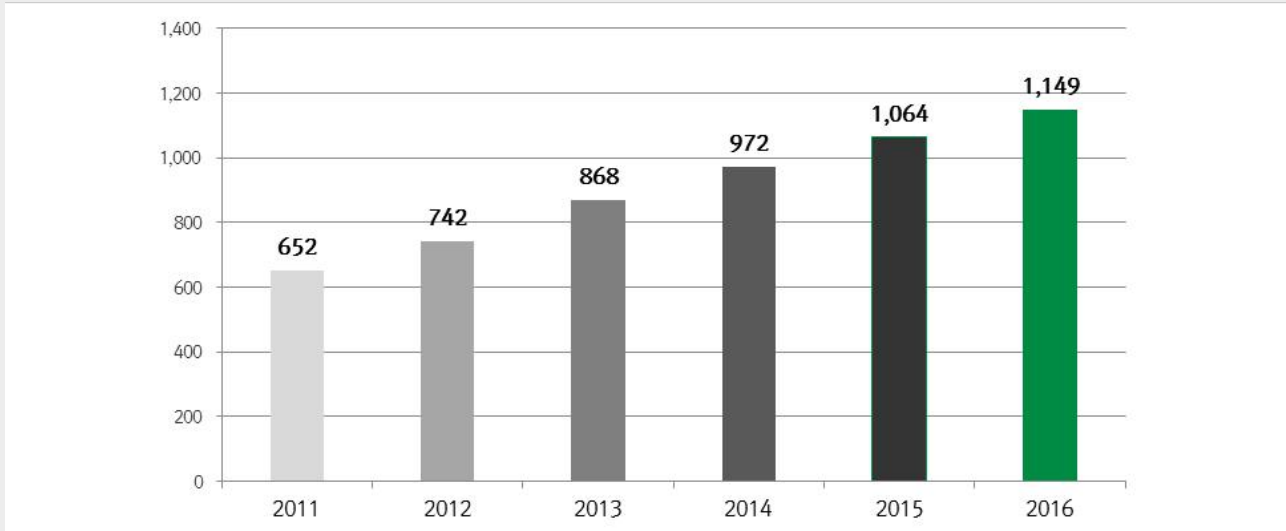
- 2016년 기준 필리핀 내 HS CODE 0901.21 최대 수입국은 말레이시아로 323만 1,000달러의 수입액을 기록하였으며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연평균 55.4%의 가파른 성장률을 보임
- 2016년 기준 필리핀 한국산의 수입 규모 통계는 산출되지 않았지만 2014년, 2015년 수입 규모는 각각 6,000달러, 3,000달러로 확인됨

3. 품목통계 종합분석

필리핀 커피 판매액 규모 추이

표 1.6 : 2011 ~ 2016 필리핀 내 커피 판매액 규모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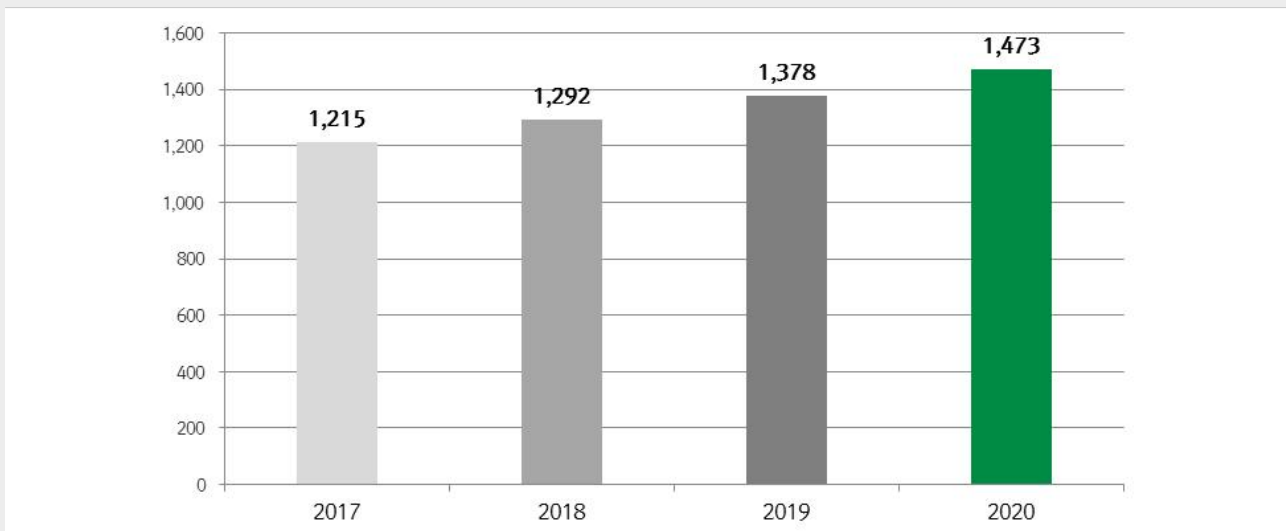
출처 : Euromonitor(www.euromonitor.com)

-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유로모니터의 자료의 필리핀 커피 시장 보고서에 의하면, 필리핀 내 커피 판매액 규모는 2011년 6억 5,200만 달러에서 2016년 기준 11억 4,9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함

필리핀 커피 판매액 시장 전망

표 1.7 : 2017 ~ 2020 필리핀 커피 판매액 시장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출처 : Euromonitor(www.euromonitor.com)

-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필리핀 내 커피 판매액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여 2020년 기준 14억 7,3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².

2. 2017 ~ 2020년도 수치는 전망치임

Ⅱ. 통관 및 검역 정보

※ 통관 및 검역절차 OVERVIEW

※ 관세율 정보 OVERVIEW

1. 통관 및 검역 절차
2. 관세율 정보
3. FTA 정보
4. 통관 및 검역 유의사항

*필리핀의 경우, 통관거부 사례는 조회되지 않아 해당 정보는 제외하였음

통관 및 검역절차 OVERVIEW

필리핀 통관 검역 절차도



출처 : 필리핀 관세청(www.customs.gov.ph), 한국조세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필리핀', 2015.12

통관절차별 유의사항

통관절차	유의사항
물품 도착 및 수입신고 전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출입 면허 신청 서류(신청서, 법인등기사본/개인사업자등록증사본, 재무제표 사본, 법인세 납부증명, 각종 공과금 납부증명) - 통관서류 서류(상업송장, 견적송장, 선하증권, 화물운송장, 포장명세서)
수입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 단일통관 창구 National Single Window를 통해 수입신고 - 사전에 허가가 필요한 제품은 현지 세관 도착 이후 수입 허가를 받을 시 3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
검사 및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per Green Lane, Green Lane, Red Lane으로 분류되어 통관이 진행
관세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에 등록된 수입자 거래은행을 통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음 - 부가세 12% 납부 필요

출처 : 필리핀 관세청(www.customs.gov.ph), 한국조세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필리핀', 2015.12

관세율 정보 OVERVIEW

2017년 관세율 정보

HS CODE	품명	관세율	
		최혜국	FTA
0901	커피(볶은 것인지 또는 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커피의 각과 피 및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	-
0901.21.10A, 10B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A, B : 40%	5%

필리핀 부가가치세 정보

필리핀에서 원두커피의 경우 부가세 **12%**가 부과되고 있음

필리핀 FTA 세율 정보

한·ASEAN FTA 협정세율에 해당되어 관세율 **5%**가 부과됨

TIP_제품 관세율 확인법

관세율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3.0'을 확인하거나, FTA 세율의 경우 한국무역협회 'TradeNavi(www.tradenavi.or.kr)'의 'FTA/관세' 메뉴를 활용하여 관세율을 조회할 수 있음. 필리핀의 경우 필리핀 관세위원회의 관세율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함

분류	사이트명	URL
관세율	관세법령정보포털 3.0	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Tradenavi	www.tradenavi.or.kr
	필리핀 관세청	www.customs.gov.ph

보다 더 정확한 품목별 HS CODE 및 관세율 정보 취득을 위해서는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 콜센터' 혹은 'FTA콜센터' 의 관세사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전문 관세 사무소를 통해 상담을 받도록 함

분류	사이트명	전화번호
관세율	트레이드 콜센터	☎ 1566-5114
	FTA 콜센터	☎ 1380

1. 통관 및 검역절차

수출 전 준비사항

우선적으로 필리핀에 식품 수출 시 필리핀에서 해당 품목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만약 수입이 규제되는 품목에 해당할 시 인증이 복잡하고 다수의 증빙을 요구하고 있어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수입 면허를 요구하는 물품의 경우, 수입 면허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매년 갱신해야 함

한국 수출기업은 수출입 증명을 DTI³나 SEC⁴에 등록하고 거래하게 될 도시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BIR⁵ 등에도 미리 등록하여 수출 물품이 통관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모든 수출자는 통관 과정에서 BIR 등록 시 제공되는 고유의 납세등록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TIN)를 사용하게 됨

수출자는 외국인 구매자에게 견적송장을 보낸 후 무역거래가 확정되고 나면 외국인 구매자 측에서 사인한 견적송장을 다시 돌려받아야 함. 수출자가 물품 운송 준비를 끝낸 후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추가서류들과 함께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은 AL(Authority to Load)에서 이를 검사함. 한편 사전수출승인품목은 관련 수출승인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 특정 품목의 수출에 대해 품목별로 개별 인증기관의 허가를 획득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표 2.1 : 해외통관 애로사항 문의처

기관	연락처
관세청 해외 통관 지원센터	- 전화 : 042-472-2197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전화 : +63-2-856-9210
필리핀 관세청	- 전화 : +63-2-702-6000

출처 : 필리핀 관세청(www.customs.gov.ph), 한국조세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필리핀', 2015.12

- 3. 필리핀 무역산업부(DTI, Department of Trade Industry)
- 4. 필리핀 기업등록 및 감독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5. 필리핀 국세청(BIR, The Bureau of Internal Revenue)

1. 통관 및 검역절차

STEP #1. 서류준비

필리핀 수입을 위해서는 해당 수입업자가 필리핀 관세당국의 고객등록 시스템(Client Profile Registration System)에 기업정보를 등록하고 수입면허(Customs Accreditation Secretariat)를 취득하여야 함. 수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SEC 법인등기증, 재무제표, 소득세 납부실적, 유틸리티 청구서 등을 구비해야 하며 수입면허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매년 갱신이 필요함

수입물품은 허가, 규제, 금지 품목이 분류되어 있으므로 해당 품목의 규제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특히 민감 품목으로 분류된 농산물 분야에 대해서는 수입쿼터제(Minimum Access Volume)를 실시하고 있음. 필리핀은 RA No. 6506에 의거하여 수입쿼터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입쿼터 지정 품목의 경우 정부에 할당을 받은 업체만 수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

STEP #2. 수입신고

수입업자는 필리핀 단일통관 창구 National Single Window를 통해 수입 신고를 할 수 있음.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수입신고서류와 품목별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수입신고 시 상업송장, 견적송장, 선하증권, 화물운송장, 포장명세서 등을 구비해야 함. FTA 적용 품목일 경우에는 필리핀 세관 통관 시 추가로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신고 서류에 첨부해야 함

사전에 허가가 필요한 제품은 현지 세관 도착 이후 수입 허가를 받아 제출할 경우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사례로 분류되어 3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함

표 2.2 : 수출입 면허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법인등기사본(Sec Certificate of Registration)/개인사업자등록증사본(Proof of Registration of DTI)
- 회계사가 서명한 재무제표 사본(Audited Financial Statement)
- 법인세 납부증명(Income Tax Return of the Company)
- 각종 공과금 납부증명(Proof of Utility Billing)

출처 : 필리핀 관세청(www.customs.gov.ph), 한국조세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필리핀', 2015.12

6. 필리핀 공공법 650조(Republic Act No. 650)

1. 통관 및 검역절차

STEP #3. 검사 및 심사

수입신고를 마친 이후에는 필리핀 세관에서 Super Green Lane, Green Lane, Red Lane으로 분류되어 통관이 진행됨. Super Green Lane의 경우 우수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화물 도착 전 전자서류로 통관을 신청하면 물품 도착 이후 추가 서류와 검사 없이 통관이 가능함

STEP #4. 관세 납부 및 반출

검사 및 심사 이후 관세를 납부하게 되면 반출이 허가되며, 수입된 물품이 필리핀 국내 시장으로 반입되기 이전에 납부를 완료해야 함. 관세 및 부가세 납부는 세관에 등록된 수입자 거래은행을 통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음. OLRS(On-line release system)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관세 납부를 통보받은 후 화물 양도가 가능함. 관세 이외에도 수입관세를 더한 금액의 12%를 부가세로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함

표 2.3 : 필리핀 수입 통관 필요 서류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C/I)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P/L)
-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 화물운송장(Way Bill)
- 견적송장(Pro forma Invoice)

출처 : 필리핀 관세청(www.customs.gov.ph), Bureau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www.bfar.da.gov.ph)

표 2.4 : 필리핀 통관절차

구분	지정기준	통관절차
Red Lane	신규업체 수입이력 불량업체	화물 도착 전 통관신고 실물 및 서류검사 관세청 사후 회계조사
Green Lane	양호한 과거 수입기록을 가진 수입업체	화물 도착 전 통관신고 관세청 사후 회계조사
Super Green Lane	우수 수입업체	화물 도착 전 전자서류로 통관신고 도착 즉시 서류 및 실물검사 없이 통관

출처 : 필리핀 관세청(www.customs.gov.ph)

2. 관세율 정보

원두커피, 협정 관세율 적용되어 5% 부과

원두커피는 필리핀에서 HS CODE 0901.21.1000으로 분류되며 커피의 경우 민감품목군으로 분류됨. 필리핀에서 원두커피에 부과하는 관세는 한·ASEAN FTA 협정 관세율이 적용됨. 수량제한 내(A), 외(B)로 다시 HS CODE가 구분되지만 FTA 관세율 적용시 해당 품명 내에서 관세율은 같음

이외에도 필리핀은 HS CODE 0901류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 관세 외에도 내국세로 부가가치세 12%를 부과하고 있음. 필리핀의 소비세는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며 2006년 2월 1일부로 필리핀 대통령에 의해 12%로 인상됨

표 2.5 : 필리핀 내 원두커피 HS CODE 분류

국가	HS CODE	품명	관세율
필리핀	0901	커피(볶은 것인지 또는 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커피의 각과 피 및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
	0901.2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
	0901.21.10	분쇄하지 아니한	-
	0901.21.10A	수량제한 내	5%
	0901.21.10B	수량제한 외	5%
	0901.21.20	분쇄한 것	5%
	0901.21.20A	수량제한 내	5%
	0901.21.20B	수량제한 외	5%

출처 : 한국 관세법령정보포털 3.0(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필리핀 관세위원회(www.tariffcommission.gov.ph)

3. FTA 정보

한·ASEAN FTA 체결로 5% 관세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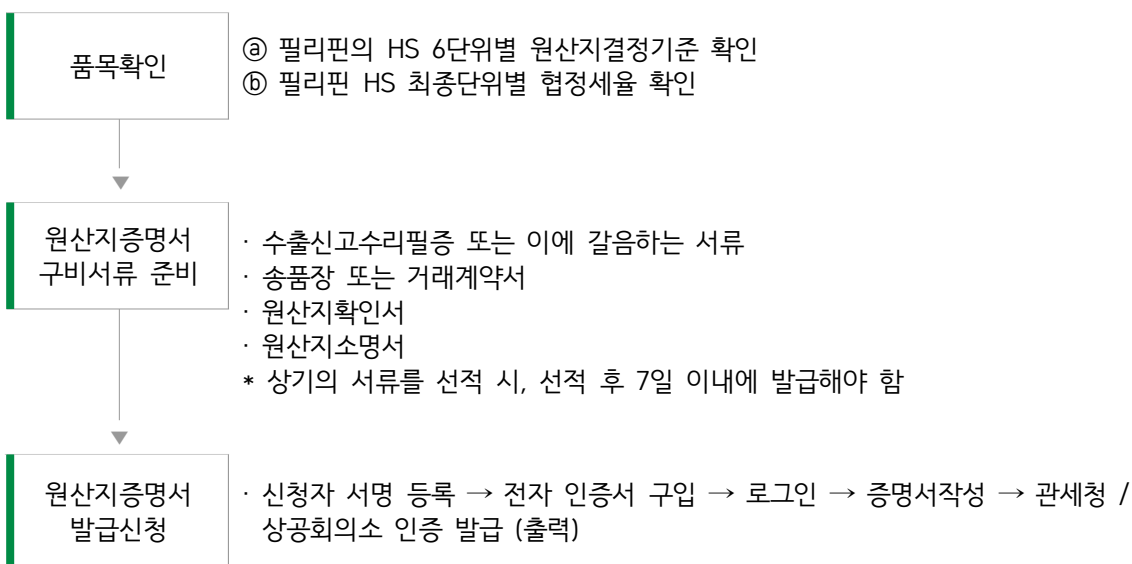
2005년 12월 13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과 한국간의 FTA 협정이 체결되어 HS CODE 0901.21.1000는 한·ASEAN FTA 체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

FTA 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필요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임.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해야 상대국에서 FTA 세율 적용이 가능함

한·ASEAN 협정문에서 원산지 부여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역내가치 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하는 물품의 원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지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함

표 2.6 : 한·ASEAN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 및 서류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cert.korcham.net)

4. 통관 및 검역 유의사항

통관 시 사업면허(LTO), 제품등록 신청서(CPR) 필수

필리핀으로 식품을 수입하기 전에 제품을 등록하는 과정을 거쳐 라이선스를 발급받기 때문에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식품들을 검사하는 시스템은 없으며, 사업면허(LTO, License to Operate)와 제품등록 신청서(CPR, 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두 개의 문서를 제시해야 함. LTO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이후에 갱신된 라이선스는 5년간 유효함

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입식품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되어 식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을 막기 위한 역학데이터가 조사되며, 만약 수입식품에 문제가 생기면 회수명령을 내리고 시장에서 해당되는 제품을 모두 회수함. 추가적으로 필리핀으로 수입된 한국 식품의 부적합 리스트 항목은 수입 식품검사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따로 홈페이지에 공고되지 않으며, 수입 국가로부터 해당식품이 문제가 있다는 검사성적서를 받은 후 공고를 진행함

식품 의약국(FDA) 등록 필수

또한 식품 및 농산품은 필리핀의 식품 건강 및 위생법을 따라야 하며, 식품 보건 및 위생법의 일반 원칙은 식품 안전 기준, 규정 및 식품 교역에서의 식품 안전과 공정한 무역 관행의 엄격한 준수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모든 포장식품, 약품 및 화장품은 식품 의약국(FDA, Food and Drugs Administration)에 등록 되어야하며, 식품의약청은 부정표시 및 불량품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매되거나 판매용으로 진열된 모든 미등록 수입식품 및 의약품을 몰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참고 문헌

※ 참고 자료

1. Philippines eyes halal tourism market	Philippine Star	2016.03.11
2. Retail Foods Manila Philippines 2016	USDA	2016.12.19
3.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필리핀	한국조세연구원,	2015.12
4. 필리핀 수입관련제도	KATI	2014
5. Revised Rules and Regulations Governing The Labeling of Prepackaged Food Products	Republic of the Philippines Department of Health	2014.08.09

※ 참고 사이트

1. ITC	www.trademap.org
2. 한국 관세청	www.customs.go.kr
3. 한국 관세법령정보포털 3.0	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4. 필리핀 관세위원회	www.tariffcommission.gov.ph
5. Global data	consumer.globaldata.com
6. 필리핀 통계청	psa.gov.ph
7. Lazada	www.lazada.com.ph
8. Euro Monitor	www.euromonitor.com
9. Data Monitor	www.datamonitor.com
10. Nestle	www.nestle.com
11. SM Markets	smmarkets.ph
12. Gaisano Mall	www.gaisanomalls.com
13. Metro	www.metro.com.ph
14. MAYORA	www.mayora.com
15. 동서 식품	dongsuh.co.kr
16. 대한상공회의소	cert.korcham.net
17. 필리핀 식약청	www.fda.gov.ph
18. 식품의약품안전청	www.mfds.go.kr
19. IDCP	www.idcphalal.com
20. SGS Group Philippine	www.sgs.ph
21. 필리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www.aqsiq.gov.cn